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5.12.23.>

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[ ] 신규 [ ] 변경 신고서

*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영화상영관 경영자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대표자)	전화번호
영화상영관	명칭	상영물의 종류
	소재지	전화번호
	착공일자	개관일자
시설내역	부지면적 ㎡, 연건축면적 ㎡, 지하 층, 지상 층 관람석 규모 개	

등록번호		등록연월일	년 월 일

*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 (□신규, □변경)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첨부 서류	※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. 1.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(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) 2.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	➔	접수	➔	확인	➔	결재	➔	수리
신고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 담당부서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 담당부서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 담당부서)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